

영화 및 비디오물의
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

제41조제4항의 신설



			2016				
구분		좌석 수	극장 수	증감 수	전년대비 증감(%)	스크린 수	
멀티플렉스	3대 멀티플렉스	CGV	162,254	133	3	2.3%	996
		롯데시네마	127,908	112	5	4.7%	793
		메가박스	78,696	85	11	14.9%	590
		소계	368,858	330	19	6.1%	2,379
	기타 멀티플렉스	10,693	5	-1	-16.7%	49	
총계		379,551	335	18	5.7%	2,428	
비 멀티플렉스		19,151	82	11	15.5%	147	
극장 총계		398,702	417	29	7.5%	2,575	

영화명	상영일	스크린수
군함도	2017-07-26	2,027
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	2016-04-30	1,991
스파이더맨 홈 커밍	2017-07-09	1,965
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	2015-04-25	1,843
검사외전	2016-02-09	1,812

영화명	상영일	스크린수
부산행	2016-07-23	1,788
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	2017-06-21	1,739
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	2016-03-26	1,709
미녀와 야수	2017-03-19	1,627
명량	2014-08-03	1,587
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	2014-06-25	1,512

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> 제41조제4항 신설

현행법

신설

개정안

④ 5개 초과인 영화상영관을 소지한 복합상영관의 경영자는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복합상영관의 각 영화마다 배정된 영화상영관 수를 신고해야 하며 이 때 한 영화에 4개 초과인 영화상영관이 신고될 수 없다.

제39조 제3항 <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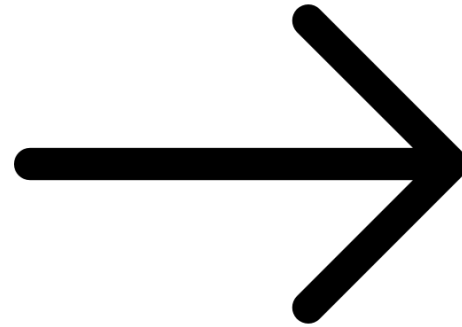
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,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.





5


4



기대 효과

- 대기업의 4중 수익구조 악용 방지
- 상영권 독점 현상 사전 방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보장
- 독립/예술영화의 보다 많은 상영으로 영화 다양성 장려
- 관객의 수요가 높은 영화 위주의 산업발전





질의

통합위원회